

보험중개사 등록 후 유의사항

보험중개업무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위규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험중개사 등록 후 등록사항의 변경, 전용계좌의 개설·변경·폐지 등 기타 변경사항을 즉시 우리원에 신고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보험업무-보험업무자료-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참조
- * 보험 관련법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법규정보-금융감독법규-보험관련법규-보험업법 및 관련규정] 참조
- * 서류 우편제출시
(우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개정보험업법 시행(11.1.24)으로 기존의 보험모집에 종사할 임원 또는 업무보조자(舊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5호)가 보험설계사로 통합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등록·말소 등의 업무는 영위하고자 하는 종목에 따라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보증금 예탁 및 중개계좌신고 등

등록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전까지 우리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

최초 영업보증금 예탁 및 보험중개계좌 신고시 ‘보증보험증권 원본,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보험중개계좌 보고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매년 4월 14일까지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취소를 할 수 있음(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 참조)

- * 영업보증금은 현금, 유가증권,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탁할 수 있으며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1억원 이상을 예탁

[인허가보증보험증권 가입 관련]

- 피보험자 : 금융감독원(116-82-14464)
- 계약자 : 보험중개사(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보험기간 : 영업개시일 ~ 익년도 4.14까지

□ **겸영금지** [보험업감독규정 제4-26조]

보험업법 제92조제2항의 겸영금지대상(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등)과 동일 건물 내의 사무실 공동사용, 상호출자, 금전·물품·정보 등의 편의제공, 인사교류 등 금지

□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및 보고**

[보험업법시행령 제38조의2 ②, 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의2]

내용 :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등

방법 : 반기 결산 후 2개월 내 법인보험중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단, 보험업감독규정 제4-27조에 따라 계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하반기 보고를 대신 할 수 있음)

□ **보험중개사 등록후 변동사항 발생시 7일내 신고**

[보험업법 제93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2조 및 제33조]

등록후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리원에 소정의 제출서류와 함께 즉시 변동사항을 신고

①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 상호, 주소, 법인 대표자, 영위종목 등

제출서류 :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변경사실 증빙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력서, 자격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등), 보험중개사 등록증 원본*(영위종목 변경시 임직원명부 반드시 제출)

* 등록사항 변경 후 등록증 재발급 송부함

② 기타 변동사항(임원, 연락처, 자본금 등) 신고

[보험업법 제93조 및 제89조의2, 보험업감독규정 제4-20조 참조]

임원의 선임·해임 등 신고시 증빙서류(등기임원인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

제출서류

- (선임)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 고지사항(개인), 이력서, 신분증 사본
- (변경) 보험중개사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변경사실을 증빙할 서류(개명의 경우 초본 등), 신분증 사본 등
- (해임) 법인명의 등록사항 변동신고서로 퇴사 증빙 같음

③ 보험중개계좌 변동신고[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

보험중개계좌 보고서 및 통장사본 제출(원보험 및 재보험계좌 구분)

④ 법인보험중개사의 지점 설치·폐쇄 등 신고

[보험업감독규정 제4-21조]

지점 설치시 지점장은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여야 함

⑤ 업무폐지, 파산 등

업무폐지 등의 사유로 보험중개사를 영위하지 않게 되는 경우 ‘폐업등 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보험중개사 등록증 원본’을 우리 원에 제출

□ 면허세 납부

- 보험중개사 등록후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관청*에 면허세를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주소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인 경우 해당 구청(영등포구청)에 면허세 납부를 문의